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,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7. 19. ~ 8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)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.

② 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(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)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)</u> ① <u>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.</u> ② <u>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(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)은 시험을 의뢰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</u>